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만기·사망·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 상해·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5. 1. 17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가목 중 “등으로”를 “등(상해·질병 등의 보험사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)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)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(계약 자적립액, 발생사고요소 및 비 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 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)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	제5조(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당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,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 금·해약환급금(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 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)·출재보험료(제4조제 2항제5호에 따른 보험료에 관 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 다)의 합계액. 다만,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 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 소에 가산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만기·사망·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	가. -----등(상해· 질병 등의 보험사고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)으로----- -----
나·다. (생략)	나·다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236